##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58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임이자·강선영·김용태

김위상 · 조승환 · 우재준

조배숙 · 최보윤 · 김태호

이종배 · 김성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'직접 도급'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,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·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기됨.

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'재하도급' 받는 업체의 근로 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,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억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 호).

법률 제 호

###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직접 도급받는"을 각각 "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기금법인의 사업) ① 기금	제62조(기금법인의 사업) ①
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	
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	
다.	<b></b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해당 사업으로부터 <u>직접 도</u>	6 <u>직접 도</u>
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	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
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	
의 복리후생 증진	
6의2. ~ 7. (생 략)	6의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	②
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	
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	
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	
산(이하 "기본재산"이라 한다)	
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	
1항 각 호의 사업(이하 "사내	
근로복지기금사업"이라 한다)	
에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	
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	

어느	하니	나에	해대	강하는	<u>-</u>	때어	는
대통료	경령 9	으로	정	하는	범	위에	서
정관의	으로	정히	는	바에	u	라라	コ
산정되	티는	금액	을	높일	수	<del>-</del> 있	다.

- 1. (생략)
- 2.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는 경우
- 3. (생략)
- ③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
급 받는
3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